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 안 번 호 | 2168 |
|------------|------|

발의연월일 : 2011년 9월 6일
발 의 자 : 신성철 의원 외 6인

□ 개정이유

-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공포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 (안 제19조제2항 신설)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안 제20조의5 신설)
-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 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안 제52조제4항 신설)
- 정신이 이상있는 자에 대한 방청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및 제 3항에 위반된 것으로 삭제 필요(안 제79조제1항제3호 삭제)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현행 회의규칙)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5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조례안의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7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9조(의안의 제출과 발의)의회에서 의결 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 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 다.</p> <p><u>② <신 설></u></p> | <p>제19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 ----- ----- ----- ----- ----- ---.</p> <p><u>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 분하되, 해당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 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 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u></p> |
| <p><u><신 설></u></p> | <p>제20조의 5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 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조례안의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 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와 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 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p> <p><u>②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u></p> <p><u>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당해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 <u>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 <u>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u> <u>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u> |

| 현 행 | 개 정 안 |
|---|---|
| | <p>④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안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p> |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
|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u><신설></u> |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 제79조(방청의 제한) | 제79조(방청의 제한) |
|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u>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u> ② (생략) ③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3.(삭제)</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